

[별표 8]<개정 1985.7.3, 1990.2.9>>

검사합격표시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대상품목(종류)

수 욱

2. 시·도별 부호

서울특별시	가
부산직할시	나
대구직할시	다
인천직할시	라
광주직할시	마
대전직할시	바
경 기 도	거
강 원 도	너
충청 북도	더
충청 남도	러
전라 북도	머
전라 남도	버
경상 북도	서
경상 남도	어
제 주 도	저

3. 작업장허가 및 품목허가 번호 : 도지사가 부여한다.

4. 규격 및 표시방법

가. 표시부위 : 수욕(지욕·머리·발목 및 지욕 중에서 분리된 부분)의 외부에 보기 쉽게 표시한다.

나. 검인의 규격 및 표시요령

(1) 소·말·돼지·양의 경우에는 부도 1, 가금의 경우에는 부도 2에 의한 규격의 스탬프식 검인을 각각 사용한다. 다만, 포장을 하는 가금육에 대하여는 부도 3의 합격표시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용색소이어야 한다.

(3) 합격표시는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행한다. 다만, 냉장할 경우에는 냉장후 출고시 행할 수 있다.

다. 검인 및 검인용색소는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